

창원지방법원 2020. 10. 15 선고 2020가단659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7. 7. 10. 접수 제415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1997. 8. 22.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김석범

별지